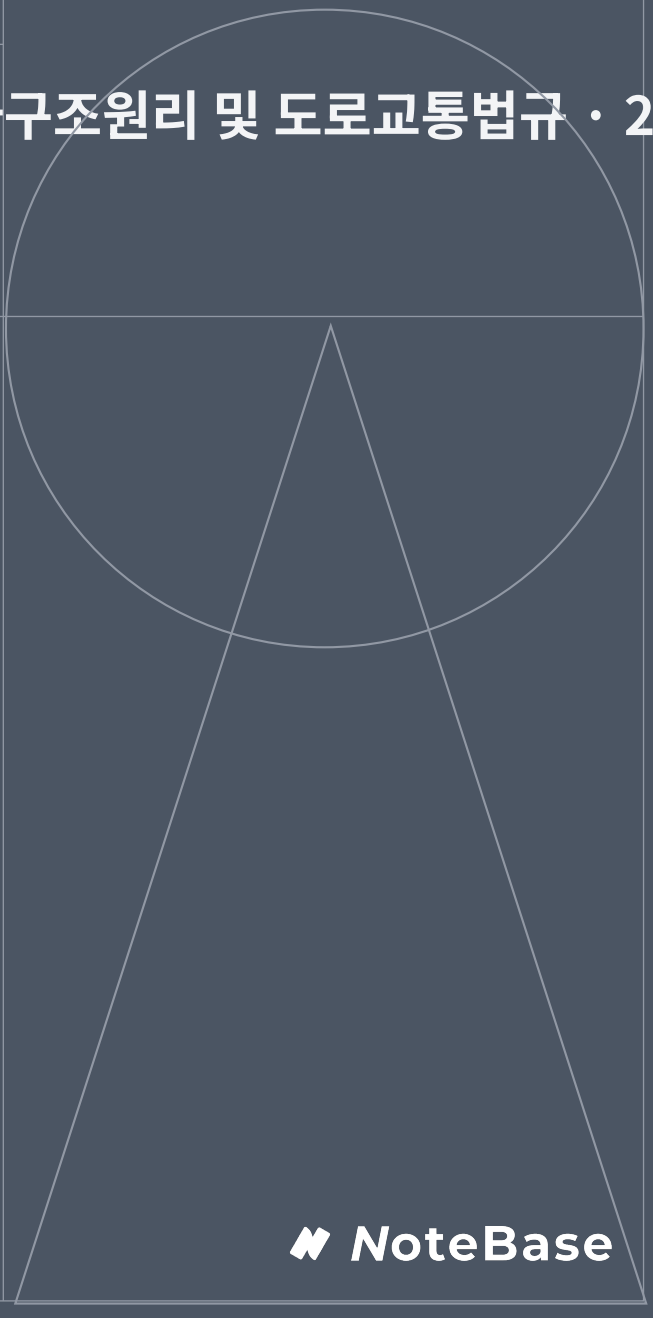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2023

공무원/서울시/9급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2023

문 1. 자동차 기관에서 1사이클 중 수행된 일을 행정체적으로 나눈 값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열효율

② 체적효율

③ 총배기량

④ 평균유효압력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1사이클에서 수행한 일을 행정체적으로 나눈 값은 **평균유효압력**이다. 같은 일을 행정체적에 걸쳐 일정한 압력으로 수행한다고 보았을 때의 압력을 뜻한다.

개념 구분

평균유효압력: 행정체적은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움직일 때 쓸고 지나가는 체적이다. 한 사이클의 일을 W, 행정체적을 V라고 하면 평균유효압력은 $p = \frac{W}{V}$이다. 실제 기관 내부의 압력은 계속 변하지만, 평균유효압력은 **같은 일을 만들어 내는 가상의 일정한 압력**으로 나타낸 값이다.

열효율·체적효율과의 구분: 열효율은 공급된 열에너지 중 일로 전환된 비율이고, 체적효율은 행정체적을 기준으로 공기가 얼마나 충전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둘 다 **비율인 효율**이므로 일을 체적으로 나누어 얻는 압력과 구별된다.

총배기량과의 구분: 총배기량은 기관의 모든 실린더의 행정체적을 합한 값이다. 이는 **체적 자체**이며, 수행한 일을 체적으로 나눈 값이 아니다.

NoteBase

문 2. 내연기관에서 윤활 작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엔진오일의 작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청 작용

② 완전연소 작용

③ 기밀 작용

④ 냉각 작용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엔진오일의 기밀 작용은 연소가스가 새는 것을 줄이는 기능이며, **연료를 완전연소시키는 기능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방청은 금속에 녹이 생기는 것을 막는 작용이다. 엔진오일은 금속 표면에 **보호 유막**을 형성해 공기와 수분의 접촉을 줄이고 부식을 억제한다.

② X: 완전연소는 연료가 충분한 산소와 적절한 연소 조건에서 타는 현상으로, **엔진오일의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진오일의 역할은 마찰 부위를 윤활하고 부품을 보호하는 것이다.

③ O: 엔진오일은 피스톤 링과 실린더 벽 사이에 유막을 형성해 미세한 틈을 메운다. 이로써 **압축가스와 연소가스의 누설을 줄여** 기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④ O: 엔진오일은 고온의 부품에서 **열을 흡수하고 운반**해 부품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억제한다. 이처럼 순환하면서 열을 빼앗는 것이 냉각 작용이다.

NoteBase

문 3. 전기와 관련된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줄의 법칙이란 전류에 의해 발생한 열은 도체의 저항과 전류의 제곱 및 흐르는 시간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말한다.

② 렌츠의 법칙이란 도체에 영향을 주는 자력선을 변화시켰을 때 유도기전력은 코일 내의 자속이 변화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것을 말한다.

③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이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회로 내의 어떤 한 점에 유입된 전압의 총합과 유출한 전압의 총합은 같다는 것을 말한다.

④ 플레밍의 왼손법칙이란 왼손의 엄지손가락, 인지 및 가운데 손가락을 서로 직각이 되게 펴고, 인지를 자력선의 방향에, 가운데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에 일치시키면 도체에는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전자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플레밍의 왼손법칙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받는 **힘의 방향**을 나타낸다. 검지는 자기장, 가운데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에 맞추고,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힘의 방향으로 읽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줄의 법칙에서 발생하는 열량은 도체의 저항, 전류의 제곱, 전류가 흐른 시간에 각각 **비례한다**. 전류 I와 저항 R이 일정할 때 시간 t 동안 발생하는 열량은 $Q = I^2Rt$이며, I를 A, R을 Ω, t를 초로 나타내면 Q의 단위는 J이다. 따라서 '반비례한다'를 '비례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렌츠의 법칙에 따르면 유도기전력은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원래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코일을 지나는 자속이 증가하면 그 증가를 억제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자속이 변화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③ X: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은 **전하 보존**에 근거하며, 회로의 한 접점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과 나가는 전류의 총합이 같다는 법칙이다. '에너지 보존'과 '전압의 총합'을 각각 '전하 보존'과 '전류의 총합'으로 고쳐야 한다. 에너지 보존에 근거하여 닫힌 회로를 한 바퀴 돌 때 전압 변화의 대수합이 0이 된다는 것은 키르히호프의 제2법칙이다.

④ O: 플레밍의 왼손법칙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전자력의 방향을 정하는 법칙이다. 왼손의 엄지, 검지, 가운데손가락을 서로 직각으로 펴고 검지를 자력선의 방향에, 가운데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에 맞추면 **엄지가 전자력의 방향**을 가리킨다. 여기서 자력선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이며, 전류의 방향은 양전하가 이동하는 것으로 정한 방향이다.

NoteBase

문 4. 일반적인 승용자동차의 제동장치인 디스크 브레이크의 구성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스크

② 드럼

③ 캘리퍼

④ 실린더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드럼은 브레이크 슈가 안쪽 면을 누르는 **드럼 브레이크의 구성요소**이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드럼 대신 **원판형 디스크를 패드로 양쪽에서 압착**하여 제동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디스크는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원판으로, 로터라고도 한다. 패드가 **디스크의 양쪽 면을 눌러** 발생하는 마찰력이 회전을 억제한다.

② X: 드럼은 **드럼 브레이크에서 슈의 마찰재가 안쪽 면을 누르는** 회전체이다. 디스크 브레이크의 마찰 상대 부품은 드럼이 아니라 원판형 디스크이다.

③ O: 캘리퍼는 디스크를 사이에 두고 설치되는 부품으로, 패드와 피스톤 등을 지지한다. 피스톤의 힘으로 **패드를 디스크에 압착**하여 제동할 수 있게 한다.

④ O: 캘리퍼 내부의 실린더는 **유압에 의해 피스톤이 움직이는 공간**이다. 피스톤이 패드를 디스크 쪽으로 밀어 제동력이 발생하므로, 실린더도 디스크 브레이크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5. 디젤엔진의 후처리장치로서 입자상물질(PM)을 포집하여 태우는 기술로 PM을 8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매연 저감장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DOC

② DPF

③ EGR

④ NOx 촉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DPF는 배기가스 속 입자상물질(PM)을 **필터로 포집**하고, 쌓인 그을음을 태우는 **재생** 과정으로 제거한다. 이 포집·재생 방식이 문제에서 설명한 매연 저감 기술이다.

핵심 풀이

DPF(디젤 입자상물질 필터)는 배기가스가 다공성 필터를 통과할 때 그을음을 걸러 낸다. 그을음이 계속 쌓이면 배기가스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이를 산화·연소시켜 제거하는 **재생 과정**이 필요하다. 적절한 운전·재생 조건에서 PM을 80% 이상 저감할 수 있어 문제의 설명에 해당한다.

DOC(디젤 산화촉매)는 주로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를 산화한다. PM 중 유기성분도 줄일 수 있지만, **그을음을 필터로 포집한 뒤 태우는 방식**과는 구별된다.

EGR(배기가스 재순환)은 배기가스 일부를 흡기 쪽으로 되돌려 연소온도를 낮추고 질소산화물(NOx)의 생성을 억제한다.

NOx 촉매는 배기가스 속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이다. 두 기술의 주된 대상은 **입자상물질이 아니라 질소산화물**이다.

NoteBase

문 6. 가솔린기관의 윤활 경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오일팬 → 오일펌프 → 오일필터 → 오일 스트레이너 → 오일통로 → 실린더 헤드
② 오일팬 → 오일필터 → 오일펌프 → 오일 스트레이너 → 오일통로 → 실린더 헤드
③ 오일팬 → 오일 스트레이너 → 오일펌프 → 오일필터 → 오일통로 → 실린더 헤드
④ 오일팬 → 오일통로 → 오일필터 → 오일펌프 → 오일 스트레이너 → 실린더 헤드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오일 스트레이너는 **펌프에 들어가기 전** 큰 이물질을 걸러 주고, 오일필터는 **펌프가 압송한 오일**의 미세한 불순물을 걸러 준다. 이렇게 여과된 오일이 오일통로를 따라 실린더 헤드의 윤활 부위로 공급된다.

올바른 순서

오일팬 → 오일 스트레이너 → 오일펌프 → 오일필터 → 오일통로 → 실린더 헤드

오일팬: 기관 아래쪽에서 윤활유를 저장한다. 이곳에 모인 오일이 펌프의 흡입 작용으로 오일 스트레이너를 거쳐 올라간다.

오일 스트레이너: 펌프 흡입구 쪽의 망으로 **큰 이물질을 먼저 걸러** 펌프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 따라서 오일펌프보다 앞에 놓인다.

오일펌프: 스트레이너를 통과한 오일을 빨아들여 **압력을 가해 보낸다**. 이 압력으로 오일이 필터와 오일통로를 지나 윤활 부위까지 공급된다.

오일필터: 펌프가 보낸 오일에서 **미세한 불순물을 걸러 낸다**. 스트레이너의 거친 여과에 이어 더 세밀하게 여과하여 윤활 부위의 마모를 줄인다.

오일통로: 필터를 통과한 오일을 기관 내부의 각 윤활 부위로 분배하는 길이다. 이 통로를 통해 실린더 헤드 쪽에도 오일이 전달된다.

실린더 헤드: 오일통로로 공급된 오일이 캠축 등 헤드에 설치된 밸브 작동 부품을 윤활한다. 윤활을 마친 오일은 아래로 흘러 오일팬에 모여 다시 순환한다.

NoteBase

문 7. 기관의 최고 회전속도를 측정하여 변속기와 기관의 종합적인 성능을 시험하는 스톨 테스트(stall test)의 방법 및 결과 분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가속페달을 완전히 밟은 후 기관 RPM을 읽는다.

② 변속레버를 'N' 위치에 두고 한다.

③ 기관회전수가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으면 엔진의 출력 부족이다.

④ 기관회전수가 기준치보다 현저히 높으면 자동변속기 이상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스톨 테스트는 변속레버를 **D 또는 R 위치**에 두고, 브레이크로 차량의 움직임을 막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N 위치에서는 주행 동력이 차단되어 시험에 필요한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스톨 테스트는 차량을 정지시킨 채 자동변속기에 부하를 걸고 기관의 최고 회전수를 측정하여, 엔진 출력과 변속기의 동력 전달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시험이다. 측정값은 해당 차량의 규정 스톨 회전수와 비교한다.

① O: 브레이크 페달을 충분히 밟아 차량이 움직이지 않게 한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완전히 밟고, 이때의 최고 기관회전수를 읽는다. 이는 **부하가 걸린 상태의 최고 회전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측정 후에는 즉시 가속페달에서 발을 뗀다.

② X: 변속레버는 **N이 아니라 D 또는 R 위치**에 둔다. D나 R에서는 동력이 전달되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로 차량의 움직임을 막아 시험 부하를 만들 수 있지만, N은 중립이므로 같은 시험 조건을 만들 수 없다.

③ O: 같은 부하 조건에서 기관회전수가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으면 **엔진의 출력 부족**을 의심한다. 엔진이 충분한 힘을 내지 못하면 가속페달을 완전히 밟아도 규정된 스톨 회전수에 도달하지 못한다. 다만 낮은 회전수만으로 원인을 하나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토크 컨버터 이상 가능성도 함께 점검한다.

④ O: 기관회전수가 기준치보다 현저히 높으면 **자동변속기 내부의 미끄러짐이나 유압 부족** 등을 의심한다. 클러치나 브레이크가 제대로 동력을 전달하거나 회전 요소를 고정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시험 부하가 유지되지 않아 기관회전수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

NoteBase

문 8. <보기>에서 흡기장치의 구성 부품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디퍼렌셜 기어 ㄴ. 촉매 변환기
ㄷ. 흡기 매니폴드 ㄹ. 스로틀 밸브
ㅁ. 크랭크축 ㅂ. 피스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ㅁ, ㅂ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흡기장치는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실린더로 보내는 장치이다. **흡기 매니폴드**는 공기 또는 혼합기를 각 실린더로 분배하고, **스로틀 밸브**는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한다.

보기별 해설

ㄱ. 디퍼렌셜 기어: **동력전달장치**의 부품이다. 구동력을 좌우 구동 바퀴에 전달하면서, 선회할 때 두 바퀴가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게 한다.

ㄴ. 촉매 변환기: **배기장치**의 부품이다. 연소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유해 성분을 촉매 반응으로 줄인다.

ㄷ. 흡기 매니폴드: 흡기장치의 부품이다. 흡입된 공기 또는 혼합기를 **각 실린더로 분배**하는 통로이다.

ㄹ. 스로틀 밸브: 흡기장치의 부품이다. 밸브의 열림 정도를 바꾸어 **흡입 공기량을 조절**한다.

ㅁ. 크랭크축: **기관 본체**의 구성 부품이다. 커넥팅 로드를 통해 전달받은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어 동력을 출력한다.

ㅂ. 피스톤: **기관 본체**의 구성 부품이다. 실린더 안에서 왕복운동하며, 연소가스의 압력을 받아 커넥팅 로드에 힘을 전달한다.

흡기장치의 구성 부품은 ㄷ·ㄹ이며, 이는 ③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냉방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냉동사이클은 증발 → 압축 → 팽창 → 응축의 4가지 작용을 순환 반복한다.

② 자동차 에어컨의 주요 구성품목은 응축기, 압축기, 리시버드라이어, 팽창밸브 등이다.

③ 냉매는 압축기에서 압축되어 약 70°C에서 15kgf/cm^2 정도의 고온·고압 상태가 된다.

④ 냉매의 구비 조건으로는 비등점이 적당히 낮고 증발잠열이 커야한다는 것이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은 응축과 팽창의 순서를 바꾸었다. 압축된 냉매는 **먼저 응축기에서 열을 방출하여 액화**된 뒤 팽창밸브에서 감압되므로, 증발부터 시작한 순서는 증발 → 압축 → 응축 → 팽창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냉동사이클은 증발 → 압축 → **응축 → 팽창**의 순서로 반복된다. 증발기에서 실내 공기의 열을 흡수한 냉매 기체를 압축기가 고온·고압으로 압축한다. 이어 응축기에서 외부로 열을 방출하여 액체가 된 뒤, 팽창밸브에서 압력이 낮아져 다시 증발기로 들어간다. 선지는 압축 다음의 응축과 팽창을 서로 바꾸었다.

② O: 압축기, 응축기, 리시버드라이어, 팽창밸브는 자동차 에어컨의 주요 구성품이다. 이 밖에 실내 공기의 열을 흡수하는 증발기도 있다. 리시버드라이어는 액체 냉매를 저장하고 **수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며, 팽창밸브는 냉매를 감압하고 증발기로 보내는 유량을 조절한다.

③ O: 압축기는 증발기에서 나온 저온·저압의 냉매 기체를 압축하여 **고온·고압의 기체**로 만든다. 약 70°C, 15 kgf/cm^2는 이러한 압축 후 상태를 나타내는 대략적인 값이다. 실제 온도와 압력은 냉매 종류, 외기 온도와 운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 냉매는 응축기로 보내져 열을 방출한다.

④ O: 냉매는 냉방에 필요한 낮은 온도에서 증발할 수 있도록 비등점이 적당히 낮아야 한다. 증발잠열은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단위 질량당 흡수하는 열량이다. **증발잠열이 클수록 같은 질량의 냉매가 증발하면서 더 많은 열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냉방에 유리하다.

NoteBase

문 10.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구성 단위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배터리 셀 > 배터리 팩 > 배터리 모듈

② 배터리 모듈 > 배터리 셀 > 배터리 팩

③ 배터리 셀 > 배터리 모듈 > 배터리 팩

④ 배터리 팩 > 배터리 모듈 > 배터리 셀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배터리 모듈은 **여러 셀을 묶은 단위**이고, 배터리 팩은 **여러 모듈을 조립한 단위**이다. 따라서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상위 단위일수록 크다.

올바른 순서

배터리 팩 → 배터리 모듈 → 배터리 셀

배터리 팩: 여러 배터리 모듈을 하나로 조립한 구성 단위이다. **모듈을 포함하는 상위 단위**이므로 세 구성 단위 중 가장 크다.

배터리 모듈: 여러 배터리 셀을 묶은 구성 단위이다. **셀을 포함하면서 팩의 구성 요소가 되므로** 팩보다 작고 셀보다 크다.

배터리 셀: 배터리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개별 전지**이다. 여러 셀이 모여 모듈을 이루므로 세 구성 단위 중 가장 작다.

NoteBase

문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동차를 주차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②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④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정답 1번

①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는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이다. 주차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9.28>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②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의 호위나 유도를 받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가 인정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9.28>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NoteBase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는 경우**에는 승객에게 매도록 할 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 운전자 자신의 착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9.28>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 · 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④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에는 착용 예외가 인정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9.28>
1. 부상 · 질병 ·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NoteBase

문 1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②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③ 행사를 위하여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④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정답 3번

①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경우**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②

택시는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NoteBase

③

전용차로 통행 예외는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 택시의 승하차 목적 일시 통행, 도로 파손 등으로 다른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기나 현수막을 휴대한 행사 행렬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④

도로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니어도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NoteBase

문 13.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② 특수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③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정답 2번

①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②

차량 운전을 이유로 인정되는 예외는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이다. 특수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NoteBase

③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 중에도 휴대용 전화 사용이 허용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법정 장치를 이용하면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이 허용된다. 이 장치는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NoteBase

문 14.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나갈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는 곳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행자우선도로

② 도로 외의 곳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④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정답 4번

①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 보행자우선도로

②

도로 외의 곳도 적용 대상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3. 도로 외의 곳

NoteBase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④

해당 의무의 대상은 보도·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이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NoteBase

문 15. 「도로교통법」상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바깥쪽 차선으로 진입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1번

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바깥쪽 차선으로 진입한다는 이유로 양보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회전교차로의 **반시계방향 통행은 모든 차에 공통된 법정 의무**이다. 운전자가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 중 임의로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중 하나의 조치**가 요구된다. 언제나 일시정지만 해야 하는 규정은 아니며,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으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NoteBase

④

앞차가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신호하면 **뒤차 운전자에게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생긴다. 앞차의 신호가 적용조건이고, 의무를 부담하는 쪽은 뒤차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NoteBase

문 16. <보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가)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 (나)

① (가): 1명, (나): 1명
② (가): 1명, (나): 2명
③ (가): 2명, (나): 1명
④ (가): 2명, (나): 2명

정답 2번

①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승차정원이 각각 1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②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승차정원은 **2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NoteBase

문 17. 「도로교통법」 제31조에서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서행하여야 하는 곳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③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정답 4번

①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NoteBase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④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서행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NoteBase

문 18.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검사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③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④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정답 1번

①

제2종 운전면허의 시력 기준은 교정시력을 포함하여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하므로, 선지의 0.8과 0.5는 각각 잘못된 수치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2020.12.1, 2021.5.11, 2023.6.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NoteBase

②

운전면허 취득 시 색채 식별 기준은 **붉은색·녹색·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면허 갱신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와 수시 적성검사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2020.12.1, 2021.5.11, 2023.6.20>
2. 붉은색 · 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2020.12.1, 2021.5.11, 2023.6.20>

③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청력 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55데시벨의 소리, 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2020.12.1, 2021.5.11, 2023.6.20>
3.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2020.12.1, 2021.5.11, 2023.6.20>

NoteBase

④

원칙적으로 **장치 조작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가 없어야 한다**. 다만, 보조수단이나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2020.12.1, 2021.5.11, 2023.6.20>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teBase

문 19.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서 자전거등의 통행방법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정답 3번

①

자전거등은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자전거등은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도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단순히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자전거등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걸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NoteBase

④

자전거등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NoteBase

문 20. 「도로교통법」상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되지 않는 사람은?

①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②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③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정답 4번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중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2.10, 2016.12.2, 2020.6.9, 2021.1.12>
3.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②

외국면허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뿐 아니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2.10, 2016.12.2, 2020.6.9, 2021.1.12>
3.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NoteBase

③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난민인정자는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2.10, 2016.12.2, 2020.6.9, 2021.1.12>
3.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④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를 근거로 시험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어야 한다. 선지는 이를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뒤바꾸었다.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2.10, 2016.12.2, 2020.6.9, 2021.1.12>
3.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